

Q

2002년1월1일부터 사무직(2년) 비사무직(1년)으로 구분하여 일반검진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무지개 공단내에 있고 업태가 제조업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1층은 생산,2층은 일반사무실입니다.
부서는8개 부서가 있습니다.이럴 경우 전체를 공장으로 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사무직 비사무직으로 구분하여 일반검진시 의료보험조합에 제출해야 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이때 동일한 구내라 함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이거나 서로 독립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므로 귀사와 같이 생산동과 사무동이 한 건물에 있다면 모두 비사무직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Q

당해현장의 협력업체(A,B)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건비가 A사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건설업 120억이상)이며, 안전관리자가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신청할시 선임전의 활동기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또한 B사는 4차분 계약금액이 선임대상이 아닌데(건설업 80억) 선임을 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2001.2.16)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1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에 선임되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실제 안전관리자로서 활동을 전담한 경우 지급되는 대가를 말하는바,

- 1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를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그 이전에 공사가 실제로 착공되어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제반증빙자료 등을 통해 안전관리자가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전담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실제 현장에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2 공사금액이 80억원으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현장은 아니나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고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위 사용기준 내에서 안전관리자의 월 급여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저는 공장에서 기계장비를 조작·운영하는 근로자입니다. 하루종일 기계장비의 소음에 노출이 되어있는데, 현재의 소음규제에 관한 최신 산업 안전보건법령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작업장에 대하여는 소음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흡음시설을 설치하거나 당해 기계 또는 설비를 대체, 개선 또는 밀폐하거나 소음발생원을 격리하거나 격벽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Q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건강진단 실시시기에 대하여

저는 회사의 안전보건관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2. 5.22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올해의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의 실시시기를 사무직은 2년 1회, 비사무직은 1년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산안법시행규칙 제99조에는 사무직 2년 1회 이상, 기타 1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사무직 구분 없이 1년에 1회 실시한 당사의 검진방식이 위법사항 인지요?—사업장실정에 따라 1년 2회 실시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인지 답변바랍니다.

A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고,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이거나 서로 독립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구내”로 보고, 생산동과 사무동이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서로 떨어져 있는 독립 건물이라면 “동일한 구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1년에 2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경우 건강진단 검진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